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28. 김윤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6. 1. 2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윤 의원)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함.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방어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의 부재와 조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아울러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을 보장하며,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정 제도에 대한 국

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들은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필수 의료를 기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를 마련하여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도 보장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호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임.
- 다만, 필수의료행위는 필수의료법 및 응급의료법과 별개로 정의할 필요가 있고, 중대한 과실의 정의에 일부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형사특례 조항 중 기소제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대체제도로 도입된 기존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되, 설명과정에서의 유감 등의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판단하게 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